

第23期(1987)發展政策課程履修者優秀論文(要約)
—The Summary of Selected Paper, the 23rd (1987) Graduating
Class, Advanced Center for Administrative Development—

韓國大學評價의 變遷過程과 發展方向

鄭 熙 川

(서울大學校 事務局長)

Historical Development and Desirable Direction of Accreditation System in Higher Education

Hee-Chun Chung

Secretary Genera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igher education has explosively expanded since 1945; however its quality has not caught up with its quantitative growth. This article deals with the 'accreditation system in higher education' as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may solve that kind of quality problems. The accreditat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so far has developed along three different stages. First, from 1945 to 1971, the officer-monopolizing accreditation was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econd, from 1972 to 1981, a group of expert officers and scholars did the accreditation job as higher-education reform program. And third, from 1982 up to now the self-evalu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an autonomous body composed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for the accreditation system in higher education to successfully do its own function and to be institutionalized this article proposes prescriptive models—namely accreditation-institutes model and process model—which can improve and/or supplement the existing accreditation system.

I. 緒 論

解放以後 韓國社會의 變遷過程에서 가장 두드러진 現象 中의 하나가 教育人口의 爆發的인 增加라고 할 수 있으며 特히 高等教育은 解放當時에 비해 1987年 現在 學校數에 있어서는 25倍, 學生數에 있어서는 무려 174倍의 伸張勢를 보이고 있다.

여렇듯 高等教育이 急速하게 膨脹한 것은 日帝殖民地 教育政策의 高等教育抑制에서 벗어나 解放이 되자 雨後竹筍과도 같이 大學設立認可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이 高等教育機會의 擴大量을 熱

望하는 社會的 要請으로 大學의 門戶를 開放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結果 高等教育機關의 數的 膨大와 함께 卒業者가 急激히 量產되었고 特히 私學이 支配的인 多數를 占하게 되어 1987年 現在 私學의 比重이 學校數에 있어서는 約 80%, 學生數에 있어서는 約 7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高等教育의 持續的인 量的 膨脹과 私學의 偏重現狀은 漸次 高等教育이 大衆化乃至는 普遍化될 것이豫想됨으로써 더욱 加重될 것으로展望된다. 이렇게 볼때 여기에 提起되는 큰 問題 中의 하나가 教育의 質 低下 防止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韓國의 高等教育人口의 爆增과 特히 私學比重의 懸隔한 數的

優位가 累增되어 왔음에도 不拘하고 教育與件이나 教育內容이 크게改善되지 못하여 高等教育으로서의 水準未治이라는 社會認識이 殘存하고 있음도 否認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이러한多少不實한 教育으로부터 學生과 學父母를 保護하고 究極의으로는 社會가 必要로 하는 良質의 高級人力을 賢出하여 國家發展에 寄與하면서 2000年代에 對備하기 위한 高等教育의 實質的 management를制度의으로 可能케 할 수 있는 方案이 檢討되어야 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漸次 擴大되고 있는 大衆高等教育體制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制度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着眼하여 韓國大學評價의 變遷過程을 概觀하고 이를 檢討함으로써 高等教育의 卓越性(excellence)伸張을 위한 바람직한 方向을 提示고자 한다.

II. 韓國大學評價의 變遷過程

1. 官專擔型評價時期(1945~1971)

嚴格한 意味에서 본다면 1971년까지는 韓國에서 大學業績에 관한 評價다운 評價는 없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時期에는 大學의 監督機關인 文教部가 主로 大學設立을 認可하기 위해서, 또 既存大學의 組織을 改編하기 위해서, 아니면 事案發生時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行政爲主의 立場에서 點檢·調查한 것以外에는 달리 評價를 한 것이 없으며, 뿐만아니라 이러한 類의 評價는 現在도 文教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目的이 어디에 있든 文教部가 頑固한 大學의 바람직한 水準을 設定하고 그것을 尺度로 大學敎育을 確認·分析·判斷하여 大學行政에 反映함으로써 大學發展을 誘導하는 데 寄與한 점은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一連의 評價內容을 조금더 詳論해 보면 大學을 新設하고자 하는者, 專門大學이나 單科大學을 4年制大學 또는 総合大學으로 昇格 改編하고자 하는者, 境遇에 따라서는 學科의 増設, 學生의 增員 등을 要請하는者들로부터 “大學設置基準令”이 要求하는 基準, 主要 教員의 數, 施設 設備의 規模 등에 관한 基本計劃書를 提示받아 이를 檢討하고 現場 確認하는 形式으로 評價가 實施되어 왔다. 이 境遇 學

生收容能力이나 教育與件 確保에 관한 事項뿐 아니라 該當地域의 特性, 立地條件, 高等教育人口의 需給狀況 등 많은 要素들을 評價對象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이 時期의 大學評價는 1950年代 및 1960年代의 韓國大學 특히 一部 私學의 非理로 인한 社會의 指彈이 말해주듯이 大學內의 非敎育的 要素들이 大學의 社會公器로서의 公益性과 大學發展自體까지도 阻害하는 地境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痘弊를 削減하기 위해서 實施된 것도 事實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一連의 大學評價는 文教當局의 行政目的遂行을 위해 一方通行의, 監督의 評價로始終했기 때문에 教育의 内容이나 質보다는 教育外의 い要件들에 더 雷重하였다 할 수 있다. 그結果被評價機關으로서의 大學은 可能한 限評價對象으로選定되는 것을 忌避하게 되었고 認許可를 위한 評價時에도 當面目的達成에만 及及한 나머지 評價結果를 活用하는 體系의 評價가 되지 못하고 斷片의이고 一回의 評價에 그쳤던 것이다.

2. 官·學協同型評價時期(1972~1981)

韓國에서 評價다운 大學評價가 처음 試圖된 것은 高等敎育改革事業의 推進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 韓國에서도 世界的의 趨勢와 步調를 같이하여 高等敎育改革事業에 着手하게 되었다. 1971年 7月 22日字로 制定·公布된 教育政策審議會規程에 의거同年 9月 10일에는 同審議會內에 高等敎育分科委員會를構成하여 高等敎育改革事業을 主導도록 하였다. 同分科委員會에서는 1972年을 「高等敎育改革을 위한 研究의 해」로 定하고 民主的 方式에 의한 改革案의 作成과 改革案作成의 慎重을 期하기 위하여 「高等敎育改革計劃을 위한 地域세미나」와 「高等敎育改革을 위한 國際심포지움」을 開催하였다. 이 國際심포지움에서 文教部에 建議文을 提出하였는데 그 中에는 大學의 業績評價認定制度(accreditation system)의 樹立을 勸告하는 内容이 包含되어 있었다.

高等敎育의 첫번째 事業으로 推進된 것이 實驗大學(pilot institute)의 選定과 그 運營을 통한

大學의 漸進的 改革이었다. 이 改革新事業은 그 趣旨에 비추어 大學의 自由意思에 의하여 改革의 主導的 役割을 擔當할 데에만 實效를 거둘 수 있으므로 文教當局이 모든 大學을 一律的인 對象으로 하는 劃一的 方式의 改革推進을 避하고 大學의 自發的인 改革申請이 있을 때에 限하여 專門家集團에 의한 評價를 통하여 推進키로 하였다. 그러므로 韓國의 大學評價認定은 實驗大學의 選定을 위하여 試圖되었고 實際로 1972年 9月 19일부터 9月 25일까지 現地訪問評價를 實施한 實驗大學 選定評價가 그 嘴矢라 할 수 있다. 1977년에는 이미 實施하고 있는 實驗大學 評價의 經驗을 土臺로 大學院 評價를 實施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78년에는 學問領域別 大學評價로 까지 發展하였다. 同年 11月부터 師範系 大學의 評價를 始發로 工業系 一部 大學과 經商系 大學을 評價함으로써 韓國教育에서 本格的인 大學評價時代로 접어 든 것이다.

그러나 좋은 趣旨와 目的을 갖고 出發하여 實施되었지만 大學評價가 被評價大學人們에게 善意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事實이었다. 우선 從前부터 繼續되어온 監督 次元의 評價에 重壓感을 느껴온 大學當局으로서는 어떤 形態든 「自己大學의 참모습」을 들어 내 보이는데相當한 拒否感과 負擔感을 갖고 있었다. 事實 評價結果를 대로 한 善意의 助言이나 勸告도 大學當局에서는 이를 壓力이나 干涉으로 여기는 雾闇氣였기 때문에 評價에 直接·間接으로 參與한 많은 人士들의 獻身的인 努力에도 不拘하고 大學評價가 제대로 定着되지 못하였는데 특히 評價에 의하여 認定받고 選定되는 實驗大學 評價가 大學으로부터의 拒否反應이 많았다.

結局 1979年 8月에 實驗大學 選定評價를 實施하고 그 結果 從前의 實驗大學에서 4個 大學이 追加됨으로써 全國의 4年制 大學 84個校中 43個校가 實驗大學으로 認定받은 狀態에서 10·26을 맞게 된다. 10·26事態를 契機로 불어닥친 大學의 自律化 旋風은 實驗大學 選定評價를 終息시켰다. 그리하여 1981年 2月 教育關係 法令을 고쳐 그때 까지 實驗大學에 限하여 施行한 高等教育改革事業을 全國의 大學으로 擴大하였다. 그래서 모든 大學이 評價認定을 받음이 없이 卒業學點의 引下

를 비롯한 改革新事業에 同參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實驗大學 運營評價도 1980年 1月에 實施한 評價를 마지막으로 幕을 내림으로써 1970年代 初에 出發했던 實驗大學(原來의 趣旨대로 表現한다면 先導大學이라 할 수 있다) 時代는 終言을 告한 것이다.

1981年 7月에는 韓國大學史에서 最初로 實驗大學으로 選定된 大學뿐만 아니라 全國大學을 對象으로 運營實態評價를 實施함으로써 大學評價가 一般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實施한 評價는 우선 名稱부터 從前의 “實驗大學 運營評價”에서 “大學運營綜合評價”로 바꾸고 評價의 目的도 어떤 選定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大學의 運營狀況을 評價하는 데 두고 全國의 89個 모든 大學으로부터 大學 運營에 關한 資料를 提出받아 書面評價를 實施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現地訪問評價만은 從前의 實驗大學으로서 高等教育改革事業에 經驗이 蓄積되어 있는 一部 大學으로 局限하였다. 그以外의 評價團構成, 評價方法, 評價內容, 評價節次 등은 文教當局이 從前처럼 評價專門 教授들과 協調하여 決定하였는데 實驗大學의 그것과 大同小異하였다.

3. 自律型 評價時期(1982~)

韓國의 大學評價가 文教當局의 主管에서 벗어나 別途의 機構에 의해서 實施된 것은 1982年度부터이다.

1982年 4月 韓國에서는 처음으로 大學間의 協議機構인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發足되고 여기에서 文教當局으로부터 大學評價事業을 委託받아 다른 目的事業과 함께 大學評價事業을 管掌하고 있다. 다만 評價結果는 文教當局에 報告하여 大學教育政策의 樹立에 活用키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1982年 9月에 처음 實施한 大學評價는 97個 全大學에 대한 綜合運營評價, 169個의 大學院 運營 評價 외에 專門分野別 評價로서 基礎科學系(60個校), 工學系(24個校), 特性化工大(6個校) 등을 對象으로 일제히 實施하였다. 勿論 評價 趣旨는 從前과 다름이 없으나 다만 大學의 自律的 參與度를 높인다는 立場에서 全大學을 訪問評價 對象으로 하

였다.

또 평가에서는 官主導 평가와는 달리 평가委員들이 研究的 姿勢로 大學의 制度, 運營 등에 接하면서 어디까지나 大學人們間의 對話를 擴大시키는 方向으로臨하였다.

비록 韓國 大學教育協議會가 發足하자마자 着手한 평가이고 평가計劃이 前年度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데다가 평가期間도 짧았기 때문에 特色 있는 평가結果를 얻지 못한 感은 있다 하지만 大學人们에게 大學評價에 대한 必要性和 價值性 등에 대한 理解를 한층 더 깊게 함으로써 평가 自體에 대한 共感帶를 넓힐 수 있었다. 또 實際로 각 分野別로 實施한 평가經驗을 통해 앞으로의 大學評價의 實踐方向을 模索하고 提示하는 데 좋은契机가 되기도 하였다.

1983年 6月 韓國 大學教育協議會의 評價事業 2次年度 以後부터는 여태까지의 “綜合運營評價”를 “機關評價”로 名稱을 바꾸고 學問領域에 따른 “專門分野別 評價”와 함께 大學評價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實施하고 있다.

이것은 美國과 같이 大學業績評價制度가 “大學單位別 綜合評價”와 “專門學問領域別 評價”的 二元體制로 完全히 定着된 境遇처럼 우리도 大學評價를 美國型으로 定着시키려는 것으로 判斷된다.

그런데 “機關評價”는 다시 “學部評價” “大學院評價” 그리고 “財政·經營評價” 등으로 나누어 實施하고 있고 “專門分野別 評價”는 理學系, 工學系, 語文學系, 法學系, 經商系, 其他 여러 가지 專攻分野別 등으로 나누어 1回에 適正한 몇 개의 分野를 對象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大學評價가 文教當局의 行政便宜에 의했건, 行政方針에 의했건, 아니면 大學間의 協議에 의한 自律機構에 의했건 간에 그 모두가 制度의 方式로 定着되지 못한 狀態에서 實施되다가 1984年 4月에 비로소 韓國 大學教育協議會法이 制定되고, 同 協議會의 機能의 하나로 大學의 評價가 法에 明文化됨으로써 大學間의 自律의 協議機構도, 또 이 機構에 의한 評價事業도 法으로 認定되어 制度化된 것이다.

III. 韓國大學評價의 發展方向

1. 韓國大學評價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가. 大學의 姿勢와 參與動機

大學評價는 大學側의 積極的인 自進參與가 있을 때에 그 效果가 極大화될 수 있다. 아무리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에서 “大學教育과 大學行政의 發展을 위하여 그에 必要한 資料를 確保하고 週期的으로 大學의 學事 및 運營 全般에 관한 評價를 實施해야 한다.”고 規定했더라도 大學學側이 大學評價를 肯定的으로 받아 들이지 않는 限評價實益은 微微할 수 밖에 없고 實益이 別로 없으면 評價自體가 無意味해질수 밖에 없다. “종전에는 문교부가 괴롭히더니 요즈음은 또 대학교육 협의회가 귀찮게 군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大學人이 萬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러한 拒否 雰圍氣를 早速히 刷新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萬一 또 大學을 設置·經營하는 校校法人的 財政이 貧弱하여 自信있게 評價를 받을 수 있을 程度로 教育與件이나 教育內實을 期하지 못하고 있다면 健實한 私學財政의 確保策도 아울러 講究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脆弱要因들도 自體努力 위에 外部刺戟이 添加될 때 그 治癒의 期間을 短縮시킬 수 있기 때문에 評價結果에 대한 活用策의 하나로 評價result와 文教行政과의 強力한 連繫가 制度化되는 것이 急先務이다.

過去 文教當局과 學界가 協調하여 評價를 實施하던 때는 그래도 實驗大學으로 選定되거나 “優秀實驗大學” 또는 “不振實驗大學”으로 判定받는 後續行政措置가 있었는데도 行·財政의in 支援面에서 實驗大學과 非實驗大學間に 別다른 差가 없었기 때문에 評價自體가 귀찮은 節次로 別로 歡迎받지 못한 實情이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므로 長期的으로는 美國처럼 評價받기를 自願하는 大學에 限해서 評價를 實施하고 또 많은 大學이 서로 다투어 自願할 수 있도록 誘導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評價를 반음으로써 얻어지는 有形, 無形의 惠澤을 開發하는 作業이 이루어져야 한다.

韓國에서도 美國처럼 評價結果 一定水準 以上

으로 判定될 때 「認定받은 大學」으로 公開하는 問題가 檢討되어야 한다. 即 評價結果報告書를 國家 및 公共機關, 大學, 企業體, 言論機關, 學術團體, 學父母 등 一般社會에 公開하고 政府가 學校改編, 學科增設, 學生增員이나 豫算補助 등 行・財政的인 面에서 大學을 支援할 때, 至 民間 部門에서 大學育成基金, 各種 研究費, 獎學金 등을 出捐할 때도 이 報告書를 活用하는 風土를 造成하여야 한다.

이러한 風土造成은 初期段階에서는 多少의 無理와 不作用이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物理의in 強要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水準以上의 大學에 具體의in 恵澤이 주어질 때 結局은 모든 大學의 競爭의in 參與가 普遍化될 것이다. 이 境遇에 評價結果 認定받지 못한 大學이나 評價에 參與하지 않은 大學에 대해서는 美國처럼 公開하지 않고 評價準備 期間을 充分히 주는 問題도 考慮되어야 한다. 勿論 非公開時에는 評價報告書 作成時에 非認定大學을 包含시키지 않는 方案 등이 檢討되어야 한다.

나. 評價機構

韓國에서 大學評價를 本格的으로 實施하게 된 經緯를 보면 國家가 大學教育의 質管理를 위하여 教育評價를 推進키로 하고 學者들의 意見를 수렴, 大學의 專門教授들로 評價團을 構成하여 이들에게 評價事業 自體를 一任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면 것이 評價實施의 年輪이 쌓임에 따라 當初 그 構成根據가 不明確하면 評價團도 그런대로 評價의 肯定의in 側面이 認定받게 되어 現在는 하나의 別途機構로서 法의in 保障下에 그 機能을 逐行할 수 있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韓國의 評價機構에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檢討될 수 있다.

첫째, 現行 評價機構가 評價擔當機關으로서의 專門性이 脆弱하다는 點이다. 評價를 擔當하는 韓國 大學教育協議會가 過去 文教部에서 專門教授 評價團을 構成하여 評價할 때보다는 評價에 관한 研究나 評價에 쏟는 熱意는 大端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評價機能은 同 協議會의 여러 機能中 한 部分에 不過하고 實務擔當도 1個 部署인 評價管理部에서 擔當하고 있으며, 評價研究部署도 6個 專門領域別 研究委員會의 하나인 大學評價研究委員會가 맡고 있는 實情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現在 韓國에서는 評價에 대한 大學의 認識이 아직까지 제대로 定立되지 못한 狀況이기 때문에 韓國 大學教育協議會가 評價業務에만 專念한다 해도 大學內의 이러한 雾團氣를 刷新시키는 데는相當한 時日과 研究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더우기 韓國 大學의 앞으로의 發展方向은 可能한限, 官의 干與를 줄이고 大學 스스로의 自律意志에 의해서 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해서는 大學評價機能 역시 大學人們의 合意에 의해서 自發的으로 參與하는 方式을 強化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韓國 大學教育協議會를 評價業務만을 專擔하는 機構로 改編하여 育成함으로써 評價의 專門性을 深化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評價團 構成이 大學教授 一邊倒로 치우쳐 있다는 點이다.

오늘날 大學은 그 社會的 奉仕機能의 增大로 大學과 社會와의 積極의in 力動關係가 強調되고 있음에 비추어 大學教育評價 擔當者는 이러한 現實의in 狀況에 충분히 對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教授만으로 되어 있는 評價委員構成을 보다 多樣하게 改編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點에 대해서는 W.A. Kaplin도 “專門人에 全的으로 依存하는 評價는 專門人으로 하여금 評價의 本來 意義를 濫用하게 할 憂慮를 지니고 있다”고 警告한 바 있다. 그러므로 評價團에는 各己 專攻을 달리하는 教授以外에 學父母, 企業體 關係者, 大學의 行政職員 그리고 醫師會, 藥師會, 辯護士會, 公認會計士會 등 社會의 多樣한 專門職業人 集團등도 包含시킴으로써 評價를 통한 大學教育의 質的改善이라는 本來의 目的達成은 勿論, 評價에 대한 公信力과 社會의 共感帶를 넓히는 부수적인 效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評價機構의 地方組織이 全無하다는 點이다.

全國 大學의 均衡있는 發展을 期하기 위해서는 地方大學은 그 地域의 特殊性과 立地條件에 맞는 特性을 살려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教育體制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個別의in 評價가 實施되어야 한다. 그러나 現在의 大學評價는 中央의 單一 評價機構에서 거의 劾一의in 基準에 의하여 全國의 大學을 對

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個體大學 나름대로의 發展努力에 促進役割을 크게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不充分한 面은 당장 解決은 어렵다더라도 長期的으로는 地方組織을 結成하여 特性分野의 評價를 委任實施함으로써 地方 나름대로의 多樣한 教育프로그램을 開發하도록 誘導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로 評價에 대한 評價가 전혀 考慮되고 있지 않다는 點이다.

韓國의 評價機構는 美國처럼 不實한 것이 있거나 亂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現在로서는 큰 問題가 없으나 向後 評價結果如何가 大學의 地位(status)에 決定의 影響을 미치게 될 때가 오면 評價에 따른 是非가 惹起될 것이다. 그러므로 評價機構自體나 評價機構가 행한 評價에 대한 監查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監查機能은 中央의 評價機構가 擔當하도록 한다.

다. 評價領域과 評價週期

그동안 韓國에서 實施해 온 大學評價의 領域을 보면 1972年부터 大學單位의 實驗大學 評價만 해오다가 1977年에 大學院 評價를 實施하고翌年度인 1978年부터 비로소 專門分野別 評價에着手하였다.

그 뒤 1982年 評價의 主管이 韓國大學教育協會會로 넘어온 以後부터는 大學單位의 所謂 “機關評價”에 財政·經營分野가 別途의 評價團에 의해 評價되고 “專門分野別評價”도 學問系列別 評價뿐 아니라 特性化工大 經營診斷, 國民倫理 및 이데올로기 批判教育 評價, 教養教育 評價, 私立工大 評價 등 多樣하고 特色있는 分野까지 深化시키고 있고 이러한 趨勢는 더 專門化되어 갈展望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評價를 큰範疇로 要約하면 亦是 美國과 같은 “機關評價”와 “專門分野別評價”로 二大別할 수 있고 이러한 骨格은 繼續維持될 것이다.

그러나 “機關評價”는 大學院評價時에 夜間專門大學院에 중점을 두어 不實한內容을 改善하도록 해야 하며 적어도 大學이 學問하는 곳으로서 갖추어야 할 最小要件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教育用基本施設 뿐아니라 研究支援施設을 量과 質의兩側

面에서 評價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다. 또 “專門分野別評價”亦是 多樣한 프로그램이 大學별로 特色있게 開發되어 이것이 評價되고 이 評價가 다시 교육프로그램開發에 促進劑가 되어 적어도 1個大學이 몇 個의 特色있는 교육프로그램을 開發·運營하도록 誘導해 주어야 하고 大學附屬研究機關도 그 重要度에 따라 專門分野別評價時 別途로 評價함으로써 大學의 研究機能을活性화시키는데 寄與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評價週期 問題이다.

各種評價, 그 中에서도 “機關評價”는 現在 每年 實施하고 있는데 教育與件이나 教育內容이 1年 사이에 세로이 評價를 받아야 할 程度로 큰變化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評價에 따른 業務의 번잡이 加重되고 投入에 比해 成果가 疑問視되기 때문에 이는 再檢討되어야 한다. 한편 大學의 立場에서 보면 1年에도 몇 차례씩 評價團을 맞이하여 큰變化도 없는 教育內容을 퇴풀이 說明한다는 것은 苦役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評價週期를 3年으로 하여 “機關評價”를 實施한다면 評價後 2年 동안 豊算確保등 充分한準備를 갖추어 改善勸告 받은 事項을 是正할 수 있을 것이다. “專門分野別評價”도 機關評價 實施年度에는 避하고 機關評價가 없는 나머지 2年間 聯關係이 높은 領域끼리 끊어 評價를 實施한다면 결국 모든 評價는 3年週期로 實施하게 되는 것이다.

라. 評價節次와 評價期間

現行의 評價節次는 大學의 自體의인 評價報告書에 의한 書面評價와 이를 基礎로 實際確認하는 現地訪問評價 그리고 訪問評價結果를 綜合分析審議하는 綜合評價의 順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節次는 美國의 中北部評定協會가 評價를着手하면서부터 9個段階을 거쳐 評價를 終了하는데 比한다면 너무 單調롭다. 이런 面에서 3段階로 處理되는 韓國의 評價는 여러 過程의 作業이 省略되고 있는가 하면 評價委員이 評價, 審議, 評價報告 등 業務의 性質上 分擔되어야 할 部分까지도 統合處理되고 있어 專門化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아니라 現在는 評價結果에 대한 大學側의異議申請이나 再審制度가 없는데 이것도 改善되어야 한다. 또 重要視되어야 할 現地訪問評價期間

이 너무 短期間이어서 評價가 形式에 치우칠 憂慮가 많다. 規模가 큰 大學이든 작은 大學이든 하루에 1個 大學씩 割當한 것은 아무리 書面評價를 徹底히 한다 하더라도, 一般的으로 한 大學에 2日 내지 3日間씩 評價를 實施하는 美國의 例를 考慮하지 않더라도 簡은 日程임에 틀림없다.

勿論 從前의 實驗大學 評價가 하루에 2個 大學씩 評價한 것에 비한다면 많이 改善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 實際로 現場에서의 評價協議는 大學人相互間의 意見이나 情報交換에 좋은 機會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過程이相當한 效果를 거두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이러한 일련의 評價業務 内容을 勘案한다며 評價期間은 規模가 큰 大學의 境遇 3日 程度, 작은 大學은 2日 程度로 하여 보다 많은 對話와 討議가 現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評價項目과 評價基準

現在의 項目이나 評價基準은 主로 大學教育이 實際로 實施되고 있는 現況中心으로 되어 있다. 그 内容亦是 教育內實度를 測定하기 보다는 教育與件의 測定에 더 많은 比重이 주어지고 있다.勿論 教育內實度에 대한 客觀的인 測定은 難題中의 難題이지만 이에 대한 研究開發도 있어야 할 課題中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評價項目이나 評價基準은 教育現況과 아울러 教育의 質的評價가 可能하도록 考慮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大學의 未來志向의in 教育意志도 測定할 수 있도록 專門의in 評價指標 開發이 必要하다.

“大學教育은 中等教育의 土臺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評價指標에는 이와의 連繫가 强化되어야 하고 또 高等教育의 終局課程인 大學院教育과의 連繫性도 強調되어야 한다. 이 以外에도 大學마다 教育目標가 同一할 수 없고 나름대로의 特殊性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考慮가 없다. 例를 들면 工科大學의 教育目標가 工學者(engineer)의 養成이니, 아니면 工業技術者(technologist)의 養成이니에 따라 評價項目이나 基準이 달라져야 하는데도 劃一的인 것을 使用하고 있다. 또한 現代大學이 社會속의 大學으로 그 機能이 增大됨에 따라 大學教育과 國家·社會의 要求와의 連繫關係도 反映되어야 한다.

이렇게 考察해 볼때 大學의 教育目標나 特殊性을勘案하여 必要한 部門에 限해서는 多樣한 評價準據를 設定하되 到達目標를 段階別로 差等을 두어 漸次 上向調整해 가는 方向으로 해야 할 것이다.

바. 評價報告書

大學 自體의 評價報告書인 “自體分析研究報告書”나 評價團이 現地訪問評價結果에 의하여 作成하는 “大學機關評價報告書”등은 評價內容을 빠짐없이 收錄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活用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도록 그 内容을 體系化하는 것도 重要하다.

評價計劃에 反映된 事項들은 그것이 現地訪問을 통하여 確認되고 그 結果 未盡部門이 있을 때는 評價報告書 作成時에 該當大學에 改善을 勸告하고, 또 그 原因이 制度上の問題에 基因한다면 文教當局에 建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内容들이 單純히 報告書의 要式을 갖추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그 결과가 還流(feed-back)의 過程을 通過하여 다음 回의 評價計劃에 反映되고 다시 確認되어야 한다.

그리한 措置는 萬一 大學運營에 脆弱部門이 있어 그 改善이 社會의으로 要求되거나 特히 強調되어야 할 部門이 있을 때는 반드시 取해져야 한다.

2. 韓國大學評價의 模型 構想

大學評價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韓國의 模型은 評價機構 模型과 評價節次 模型으로 나누어 提示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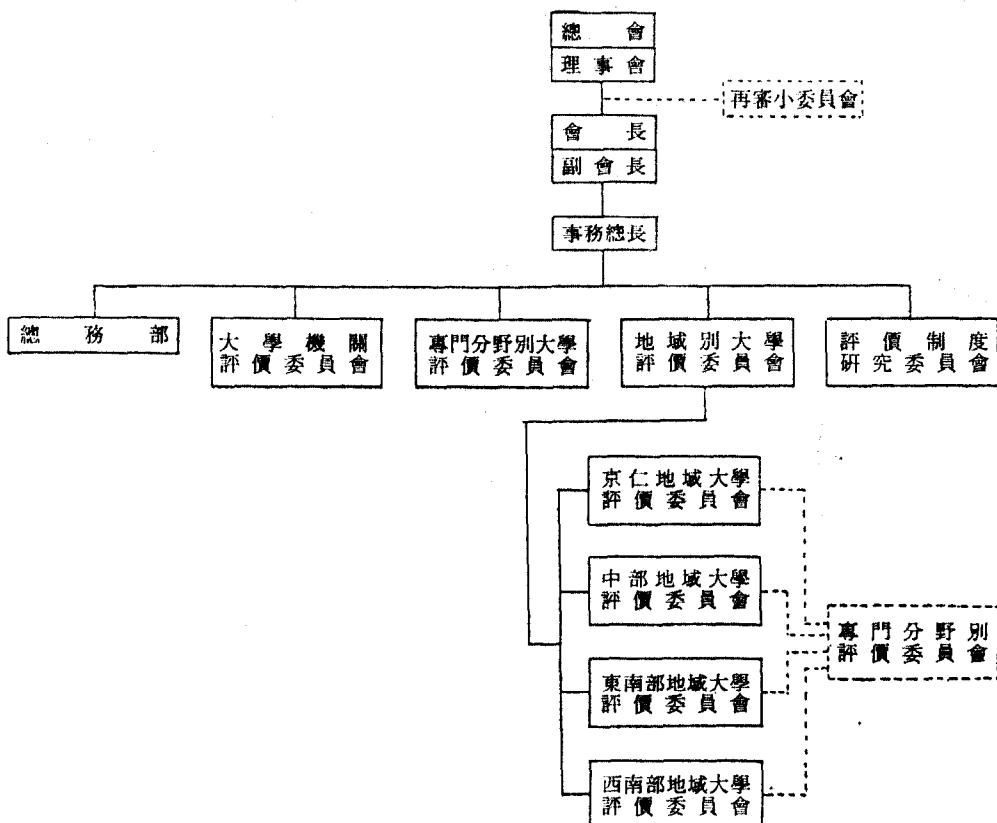
가. 評價機構 模型

評價는 外部의 強要보다는 스스로의 必要와 스스로의 意志에 의해서 實施될 때 그 效果는 極大化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도 韓國에서 처음으로 大學人 스스로의 合意로 發足되고 法으로 認定된 韓國大學教育協議會를 發展의으로 改編하여 評價業務를 專擔케 하는 것이 論理에 부합되는 方案이라 할 수 있다.

1) 機構의 類型과 性格

既存 韓國大學教育協議會를 改編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大學 自律機構로 特殊法人인 韓國大學評價協議會를 設置·運營한다. 同協議會는 法의 定

〈圖 1〉 韓國大學評價協議會 組織圖



하는 바에 따라 政府의 監督을 받으나 協議會의 모든 運營은 完全히 獨自의으로 하며 評價結果는 文教部長官에게 建議하고 文教部長官은 그에 대한 措置內容을 協議會에 通報하도록 한다.

2) 機構의 組織

機構의 基本組織은 最高議決機關으로서의 會員大學 總會와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을 處理하는 審議·議決機關으로서의 理事會를 두고 非常勤 會長 및 副會長과 常勤事務總長을 둔다. 事務總長 밑에 “大學單位別 評價”와 “專門分野別 評價”를 각각 擔當할 機構와 全國을 3~4個 地域으로 나누어 그 地域 實情에 부합되는 評價를 擔當할 機構, 그리고 評價制度를 專門的으로 研究할 機構 등을 둔다. 또 각 評價機構의 活動을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支援할 部署도 事務總長 밑에 設置한다. 이들 機構와는 別途로 評價結果에 대한 异議申請이 있음 때에 限하여 이를 審議하기 위

한 再審小委員會를 非常設로 그때 그때 設置한다. 이 再審小委員會에서 審議한 結果는 그 業務의 性格上 理事會에 直接 報告하고 그 再審結果는 理事會에서 最終 確定한다. 이들 機構들의 組織圖를 表示하면 다음 〈圖 1〉과 같다.

3) 機構의 構成

協議會는 全國의 4年制 大學을 그 會員으로 構成한다. 協議會는 會長 1人, 10人 以內의 副會長을 두되 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하고 副會長은 大學機關評價委員會, 專門分野別大學評價委員會, 地域別大學評價委員會 및 評價制度研究委員會의 委員長을 當然職으로 한다.

全 會員大學은 協議會의 最高議決機關인 總會를 構成하고 이 總會에서 委任해준 事項과 協議會設置法 및 定款에서 規定한 事項을 處理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理事會는 20人 以內로 構成하는데 協議會 會長團은 當然職 理事가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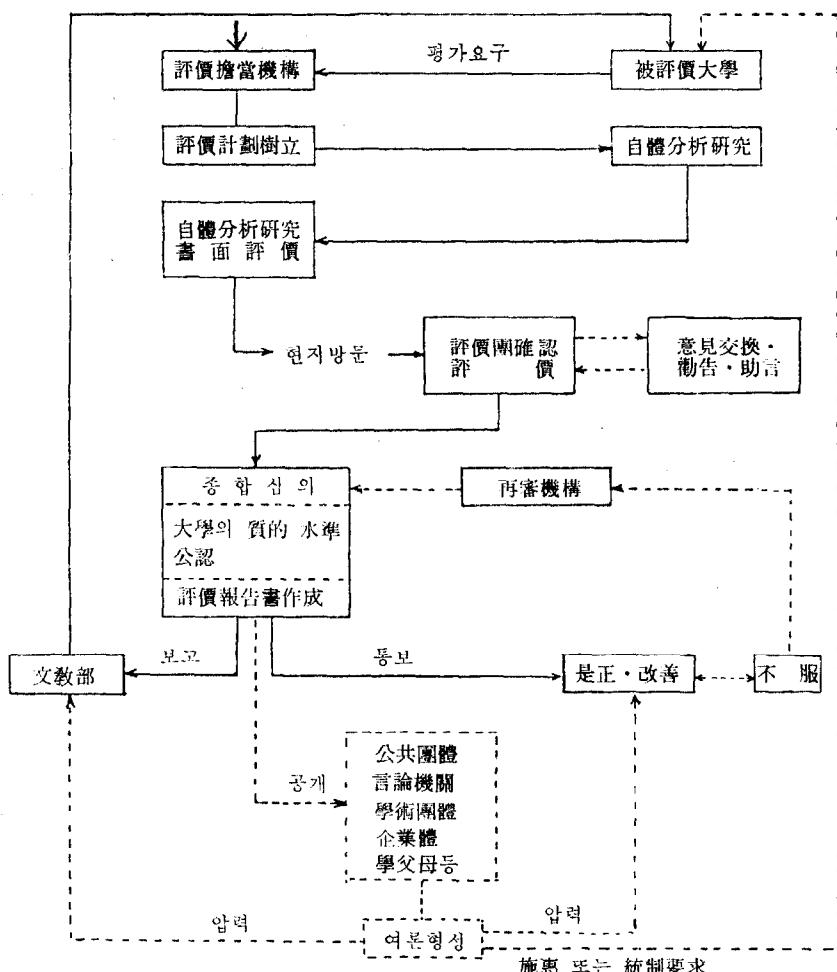
나머지理事는 회원大學總學長中에서 總會에서 選任한다. 總會 및理事會의 長은 會長이 兼任한다. 理事會에서 委任한 事項과 協議會의 事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事務總長을 두어 모든 事務를 總括하게 하고 事務總長은 主要業務 處理內容을 隨時로 會長에게 報告토록 한다.

各評價委員會도 15名 内外의 委員으로 構成되되 各界 各層에서 多樣하게 選定하며 特히 學父母 代表를 適切하게 包含시키도록 한다. 各評價委員會에는 協議會總會에서 選出하는 委員長 1人 또 委員會會議에서 互選하는 副委員長 1人을 둔

다. 協議會任員 및 各委員會委員의 任期는 3年程度로 하고 每年 각각 7명씩과 5명씩을 交替토록 하여 業務의 一貫性을 維持하도록 한다. 各委員會에는 2人~3人의 專門委員과 最小限의 行政要員을 配置한다. 地域別評價委員會는 必要時專門分野別評價委員會를 構成하여 地域特性에 따른 教育프로그램의 評價를 擔當케 한다. 再審小委員會는 再審事由가 된 當該評價에 直接 參與하지 않은 理事若干名으로 構成하고 必要時專門委員의 業務補助를 받을 수 있게 한다. 行·財政的인 支援業務를 擔當할 總務部의 部長을 비롯

〈圖 2〉 大學評價의 節次模型

政策反影 및 行·財政支援 통보



한 職員은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會長이 任命하게 한다.

4) 機構의 運營

協議會는 會長 中心으로 運營하되 實際 執行業務 總括은 事務總長 責任下에 施行하고 各種 委員會는 常設機構로 하여 委員長 中心으로 委員들의 合意에 의하여 運營하되 委員長, 副委員長 및 委員은 非常勤으로 하고 專門委員 및 行政要員만이 常勤토록 한다.

協議會 및 委員會의 運營經費는 會員大學의 會費, 政府의 補助金, 被評價大學의 評價手數料, 其他 協議會의 自體收入으로 充當한다.

나. 評價節次模型

大學評價 事業은 評價擔當 機構에서 被評價大學으로부터 評價要求를 받고 評價計劃을 樹立하여 評價에 着手한 後 一連의 過程을 거쳐 評價가 이루어지고 그 結果가 還流되어 다시 計劃에 反映됨으로써 評價事業은 漸進의으로 改善되고 大學教育도 그 質的 改善이 促進되어 갈 것이다.

앞의 <圖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評價機構가 樹立한 評價計劃을 土臺로 被評價大學에서는 自體分析研究를 하고 그 結果를 評價機構에 提出하면 評價機構 所屬의 評價團이 먼저 自體analysis研究報告書를 書面評價하고 그 内容을 現地訪問을 통하여 確認·評價하게 된다. 이때 評價方法은 主로 大學當局과 意見交換을 통한 協議나 必要한 部分에 대해서는 勸告 또는 助言을 하게 된다.

이러한 節次가 끝나면 評價團은 書面評價와 現地訪問評價 内容을 檢討分析하고 體系化하여 総合審議를 하는데 이때 必要한 경우에는 該當大學關係者를 合席시켜 意見을 提示하게 할 수도 있다. 総合審議 結果 該當大學의 質的水準을 公認하고 評價報告書를 作成하게 된다.

이렇게 作成된 評價報告書는 지체없이 文教當局에 報告하여 大學政策이나 行政에 反映하도록 하는 한편 全 會員大學에 配付하여 大學으로 하여금 是正改善하게 한다. 萬一 이때 大學側의 不服이 있으면 大學當局은 評價機構에 再審을 要求하고 評價機構는 別途의 再審委員會를 構成하여 다시 審議하여 最終確定하는 데 이 때 再審請求 大學側의 意見이 充分히 개진되도록 配慮한다.

文教當局이 政策이나 行政에 反映한 事項이나,

大學當局이 是正 改善한 事項은 다음 回의 評價報告書에 반드시 告知하도록 한다.

또 한편 最終評價報告書는 公共團體, 學術團體, 公企業 및 私企業體, 學父母 등 大學과 直接間接으로 關聯있는 社會各分野에 公開하여, 社會의 公認을 받게 한다. 이에 個別 大學校의 運營實績이 充實할 때에는 研究費 및 獎學金 支給, 卒業生의 就業機會擴大, 優秀學生 進學誘引 등 各種 恵澤이 該當 大學에 주어지게 되지만 反對로 그 實績이 不實할 때에는 社會各分野의 意見들이 與論化되어 大學에는 勿論 文教當局이나 評價擔當機構에 거센 壓力으로 作用하여 大學 改善努力를 促進시키고 文教當局의 政策樹立時 또 評價擔當機構의 다음 評價計劃作成時 反映하게 될 것이다.

以上과 같은 一連의 評價過程이 連續의이고 持續의로 反復됨으로써 大學發展을 위한 評價의 寄與가 極大化될 수 있을 것이다.

IV. 結論

上級教育에 대한 需要增加 現象에 따라 高等教育人口가 量的으로 爆增하고 있는데 反해 大學教育의 全般的인 質은 이에 充分히 副應하지 못하고 있어 教育의 不實이 憂慮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評價制度는 아직도 完全히 定着되어 있지 못한데다가 評價에 대한 大學側이나 一般의 認識이 不足하여 評價結果의 活用이 微微한 實情이고 따라서 評價實效가 期待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狀態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結果를 초래한 諸要因들을 抽出하여 구체적인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提示한 다음에 또 韓國大學教育의 質管理를 制度의으로 保障하기 위한 裝置로서 評價制度의 바람직한 模型을 提示하였다. 이 模型은 어디까지나 大學人の 合意와 參與가 必須의 임을前提로 한 模型이고 또 앞으로 指向해야 할 模型으로 構想한 것이기 때문에 그 機能이나 役割中 당장 實踐하기 어려운 部分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短期間內에 一括해서 實踐에 옮길 것이 아니라 漸進의으로 定着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評價模型이 實情에 맞게 適切히

採擇되어 제 기능을發揮함으로써 韓國의 大學이 先進된 國際水準의 大學으로 한 次元 跳躍하게 하는데 寄與토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金蘭洙, 「高等教育機關業績評定制度研究」, 1975. 10.
- 2) 金蘭洙, “80年代 高等教育의 課題, 「교육개발」 4호, 1980.
- 3) 金蘭洙 外, 「韓國高等教育改革의 方向摸索」 高等教育研究 III,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委嘱課題, 1973.
- 4) 朴大善(編), 「高等教育의 改革」,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3.
- 5) 韓國教育十年史 刊行會(編), 「韓國教育十年史」, 서울: 豐文社, 1960.
- 6) 문교부 법전편찬회(편), 「문교법전」, 서울: 교학사, 1981~1986.
- 7)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韓國高等教育의 實態」, 1973.
- 8)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外國高等教育의 實際과 改革動向」, 1973.
- 9)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 「實驗大學運營 5個年 綜合評價報告書」 1978.
- 10)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73~1979.
- 11) 文教部 大學運營綜合評價委員會,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81.
- 12)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大學運營綜合評價委員會, 「大學運營綜合評價報告書」, 1982.
- 13)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大學機關評價研究報告」, 1973~1985.
- 14)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大學評價의 發展方向摸索을 위한 세미나」, 1984.
- 15)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大學評價事業의 制度의 發展方向研究」, 1985.
- 16)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大學評價 長期發展計劃樹立을 위한 세미나」, 1985.
- 17) 鄭熙川, 「韓國大學業績評定制度에 關한 研究」, 1980.
- 18) Robert J. Keller, "Accredit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Pursuit of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Oct. 10-14), 1979.